

의안번호	2216142
의 퇴 인	민병덕의원
회 답 일	2026.1.12.
추계번호	25D7145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적용 대상자)	이 법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범위에 5·18민주화운동 특별 공로자를 추가함(제4호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적용 대상자)	현시점에서 국무회의에서 5·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의결되는 사람의 수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, 대부등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범위에 5·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를
추가하려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면 5·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와 그
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(제2장)·취업지원(제3장)·의료지원(제4장)·대부(제5장)
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은 5·18민주화운동 당시 5·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
이를 국내·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
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5·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규정
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무
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될 사람의 수, 이들의 교육지원·
취업지원·의료지원·대부지원 등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

- 그런데, 개정안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5·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의결될 인원과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과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,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- 참고로,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·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5·18민주유공자 및 수권유족 현황: 2025.11. 기준

(단위: 명)

구 분		본인	수권유족	합계
5·18민주 유공자	사망자·행불자	—	159	159
	부상자	2,094	709	2,803
	그 밖의 희생자	1,407	255	1,662
	합계	3,501	1,123	4,624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